

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장학금 지급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제35조에 따라,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석사과정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원의 석사과정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 대학원이 이 규정에 따라 매 학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적장학금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2. 연구장학금 : 국내외 전공 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
3. 공로장학금 : 본 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
4. 특별장학금 : 공직자 등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4조(장학생 사정)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원장이 시행한다.

제5조(장학금 신청) 장학금의 수혜희망자는 장학금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중수혜 금지)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. 다만 이중 수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.

제7조(장학생의 교체) 선발된 장학생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적격한 장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.

부칙 <제824호, 2017.3.3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